

# 낙농인은 한국낙농의 백년대계를 다질 수 있는 낙협설립에 동참해야



박재호  
경주 해읍목장

협동조직을 통하여 권익을 옹호 받겠다 힘은 당연한 추이었겠으나, 한국의 낙농업이 유업체 주도형이란 특수 정책으로 이끌어져 왔으므로 해서 낙농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이 가장 용이 할수있는 업종인데도, 균형된 낙협 설립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체, 4만에 가까운 낙농가가 연간 산유량 150만톤에 육박하는 오늘에 이르렀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집유일원화 시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투어 낙협설립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만시지탄은 있으나, 바람직한 일이라 우선은 여겨진다.

농업분야에서 어느 업종서 보다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낙농업이기에 낙협의 육성 발전도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으며 분업화, 전문화로 사회가 발전 될수밖에 없음으로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은 당연하

다 하겠고,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집유일원화 일진데, 생산자인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설립 운영함도 마땅 하겠거니와, 앞으로 닥아선 수입개방 자유화 시기에는, 이윤추구가 본질인 기업이 생산비가 적게드는 예컨데 과즙음료 쪽으로 생산 및 판촉에 치중하리라에 생각이 미칠때 생산자가 처리까지 책임질 각오가 되어야 한다면, 낙협설립의 당위성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주위를 살피고, 객관적인 정리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출발하면 성공하는 결과를 보장 받을수 있어야 하며 열악한 여건에서 생업을 꾸려가는 낙농가들이기에 상처는 입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전 애미에서 경험에 비추어 몇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집Ⅱ / 낙농업 협동조합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

협동조합의 특성은, 가족적인 공동유대와 친근감에 있다. 그런면에서는 구성원이나, 구역의 범위가 좁을수록 좋을것이다. 그러나, 권익옹호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채산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규모가 클수록 좋다고 하겠다. 이 양면성을 감안할때, 그리고 경비 절감을 위한 집유선 일원화를 위하여는 수개의 시군을 둑는 집유권역으로 업무구역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기존 조합에서 보여주듯 공동유대감을 결여할수밖에 없는 방대한 업무구역과 기능은 같은 낙농가이면서도 낙협 설립 및 집유일원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도 사실인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업무구역 조정에 관한 축협법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구역내의 기존 조합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협조하지 않는 한 설립인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문제점이 없는경우에도 농가간의 사소한 이해관계로 뜻이 하나로 되지 못함도, 또 이에 외부의 반작용이 영향력을 행사되므로 해서 더욱 깊은 골이 파이게 되는 현상을 보임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치 않을수 없다. 소값파동, 인력난, 일부의 투기성적 경영형태로 해서 대물려가며 가업으로 낙농을 하겠다는 꿈의 결여에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참고, 부담 안기를 꺼리는 심리도 낙협설립 투자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도 지적하고 싶다.

이상 지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우리는 낙협설립을 하지않으면 안되는것은 당위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살아 남을수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유일원화를 거론하는 가운데서도 낙농가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현 제도하에서도, 혜택은 없더라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들기도 한다. 만의 하나라도 이같은 지도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나 하나 잘살기 위하여는 이웃 사촌은 어려움을 겪어도 좋다는 사고방식은 불식되어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모두가 불행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나

제도의 결정도 우리가 단결하여 주장을 한다면 남의 손에 맡기기 보다는 우리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구역과 채산성을 고려하여 인가요건을 강화하여 난립을 막고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좀더 나아가 정책당국은 업무구역 까지도 집유권역을 설정하여 조정 내지 지도하고 기득권을 포기 할수있는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만 낙협설립은 물론 집유일원화 작업도 원만히 이루어 질수있다고 본다. 서울우유조합의 경우에서 집유조합의 업무구역을 조정하되 기존 조합원은 집유조합원으로 참여 하면서 서울우유조합에는 주주 형태로 남아 이익배당을 받을수 있게하는 방안도 논의 된것으로 듣고 있으나 이것이 합리적이거나 동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조합원들이 청원한바 있는 자산의 재 평가 후 지분 계상조치를 기각할것이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낙협에 출자금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기존 조합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입법조치 한다면 설득력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같은 조치의 선행이 요구됨을 현재의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해서 발기인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가진후 인가신청을 하기까지 수백만원의 경비와 정력을 소모하고 인가를 취득치 못한다면 결과는 너무 큰 후유증을 놓기 때문이다. 또 농가간, 지역간 이해다툼 양상도 앞장선 대표자들의 생각여하에 달렸다고 하겠으며 창립작업의 어려운 고통을 공과 함께 상대편에 양보함으로서, 굽힐줄 아는자는 능히 대접받을수 있다(屈己者能處重)는 말처럼 소탐대실(小貧大矢)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제 집유선일원화 정책시행이 눈앞에 와 있는이상 남의집 불구하고, 기존 우유조합은 쌓은 역량으로 벽을 쌓지 말것이며, 낙농농가는 눈앞의 사소하고 일시적인 이해관계에서 초연히 뛰쳐나와 농심을 바탕으로한 진지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낙농의 백년대계를 다질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낙농인을 위한 낙농협동조합 설립에 동참해야 할것이다.